



[시행 2021. 4. 21] [법률 제17530호, 2020. 10. 20, 일부개정]

산업통상자원부 (산업정책과) 044-203-4213

19 ( 가 )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, 환경적 건전성,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(이하 “지속가능경영”이라 한다)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2.>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2.>

- 1.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- 2.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
- 3.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
- 4.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2.>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8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⑧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·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<제17530호, 2020. 10. 20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